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7
----------	-----

2019년 4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18일, 김태수 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4월 1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태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하고, 중소기업 및 사업장 내에서의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를 통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기여하고 함.
- 나.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에너지절약 모범중소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구성 체계

-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제1조~제10조)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제2조는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장의 범위(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는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에너지절약 모범 중소기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는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8조는 중소기업장의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1) 중소기업장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중소기업의 에너지컨설팅과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¹⁾」을 추진해 오고 있음.

2019년도의 경우 서울시 소재 신규사업장 1,000개소, 2018년도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장 500개소 등 중소기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여름철 전기사용량 절감(5% 이상) 유도, 월별 참여사업장(점포)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증·감 요인분석, 서울시 에너지 지원정책 홍보 및 에코마일리지 가입 유도 등 에너지컨설팅과 에너지절감 제품²⁾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에너지컨설팅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장을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8호에 부합하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에너지절약 모범 중소기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2012년 이후 전년 여름철(6~8월) 대비 전력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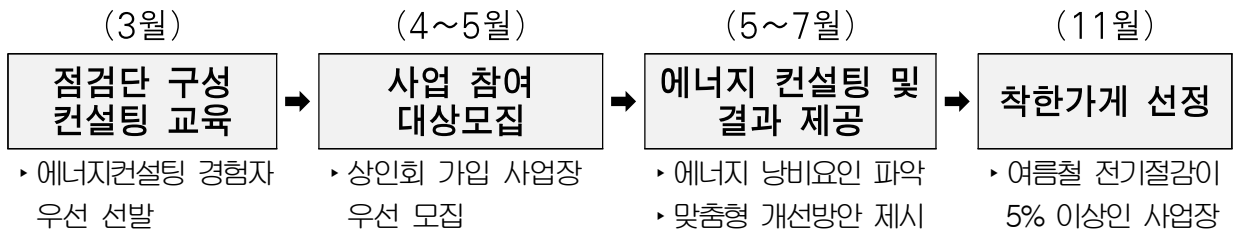
1) '19년도 예산은 1억 6천4백만원 편성

2) 멀티탭(전원차단기능), LED전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등

부여하고 지정서³⁾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4,508개소가 착한가게로 선정되었음.

〈연도별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선정 현황〉

구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증마크
참여사업장 (개소)	11,111	1,008	2,099	2,004	1,500	1,500	1,500	1,500	
착한가게 (개소)	4,508	179	696	819	737	386	635	410	
비율 (%)	40.6	17.8	33.2	40.9	49.1	25.7	42.3	27.3	



〈착한가게 선정 과정〉

3)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현재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해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너지설계사, 가정에너지컨설턴트 등 에너지컨설팅 경력자, 그린리더 교육이수자, 환경단체·기업·지역사회 에너지 관련 활동 유경험자 위주로 시민에너지점검반을 구성하고 있음.

시민에너지점검반은 해당 사업장별 2회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성과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1회 방문하고 있음.

3) 전년대비 여름철 전력사용량을 5% 이상, 2년 연속 달성한 경우

4) 개업 1년 미만, 업종명의 변경, 폐업 사업장 제외하며, 전년대비 '18년도 전기 절감률은 14.8% (309,989kWh)에 달하고 있음.

4)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운영단체는 에너지절약 모범사업장 모집,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및 에너지컨설팅 활동, 성과분석 및 최종 사업결과 제출, 성과발표회 개최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운영단체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운영단	서울에너지닥터, 에코허브	서울에너지닥터, 에코허브

- 그리고 사업 수행 운영단체(민간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에너지법」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5)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에너지절약모범 발굴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에너지절약 모범중소사업장 인증,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사업수행 민간단체 지원 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장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소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전기사용량 정보수집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절약모범중소기업 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의 전기사용량을 수집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모범중소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증 명칭은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절약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중소기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너지점검반에 대하여 에너지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의 체결) 시장은 중소기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장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